

공정거래정책

(Fair Trade Policy)

기업명	(주)유니온플레이스
문서번호	Union-S-2024-00003
제·개정일	2024-04-01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담당자	최은실 차장

〈제 · 개정 이력〉

제 · 개정 번호	제 · 개정일	제 · 개정 사유
1	2022.07.04	최초 제정
2	2023.06.17	일부 조항 추가 및 보완
3	2024.04.01	내용 전반에 대한 개정

유니온플레이스는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으로, 회사 및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정책을 선포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정책은 유니온플레이스(이하 회사)가 모든 사업과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된다.

제2장 공정거래를 위한 기본원칙

제3조(공정거래 원칙)

회사 및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또한, 협력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제4조(자유경쟁 추구)

회사 및 임직원은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다음 각 항에서 정의한 규정을 준수한다.

- 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행위, 경쟁사 정보 수집 및 교환 행위 등)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계열회사를 위하여 부당하게 비계열회사와의 거래 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를 근절한다.
- ②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하지 않는다.
- ③ 협력회사와 진행되는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의 거절이나 중단, 거래 내용 및 조건의 제한을 금지한다.
- ④ 협력회사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조(법규의 준수)

회사 및 임직원은 사업과 관련된 법규나 제도를 준수하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항에서 정의한 규정을 준수한다.

- ①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②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를 하지 않는다.
- ③ 협력회사에게 불필요한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하지 않는다.
- ④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승인,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며,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경영지원팀) 또는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등을 통해 즉시 제보한다.

제6조(상생협력)

협력회사는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 시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제3장 공정거래 현황 점검 및 위반 시 처리방안

제7조(점검 및 교육)

회사는 공정거래 현황에 대하여 점검이나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반사항 신고)

공정거래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회사는 임직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및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정책 위반에 대한 신고채널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 www.unionplace.co.kr > About > ESG 경영 > 신고센터
- 전 화 : 02-6959-8870 (경영지원팀)
- 팩 스 : 02-6959-8871 (경영지원팀)
- 이 메 일 : union_esg@unionplace.co.kr
- 우 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302호, 1303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제25조(위반사항 처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경영지원팀)는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진행 중 신고자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응답해야 한다.

공정거래정책 위반 행위자의 징계수위는 관련 법규와 회사 내규,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동일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윤리관련 교육에 대한 추가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보자 신분보호)

공정거래정책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제보자에게 신고사실을 이유로 보복하는 자가 있을 경우, 사내규정이 정하는 내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정책은 2022.07.04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정책은 2023.06.14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정책은 2024.04.01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